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제 호
----------	-----

제출년월일 2025. 11.
제 출 자 김계순 의원

1. 제안이유

- 재난 발생 시 통신 두절로 인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 아마추어무선 자원을 활용한 보조 통신체계 구축 및 관련 활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시장의 책무(안 제2조)
- 다.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라.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에 관한 사항(안 제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및 현행규정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경기도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 나. 예산조치 : 별도협의
- 다.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11. . ~ 2025. 11. .
 - 나) 예고결과 :
 - 2) 부서협의
 - 가) 협의기간 : 2024. 2. . ~ 2025. 11. .
 - 나) 협의결과 :
 - 3) 관련부서 : 안전기획관

김포시 아마추어무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와 제55조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활동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통신 두절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고, 재난대비 능력을 보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활동지원) 시장은 김포시 관내에 소재한 단체의 아마추어무선망을 활용한 긴급통신활동 지원을 위해 다음 각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운용
2. 아마추어무선사 등 긴급통신관리·운영자 양성교육 사업 지원
3. 관내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
4. 그 밖에 재난재해 대비 긴급통신수단 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포상) 시장은 재난재해 발생 시 통신 지원에 뛰어나게 활동하거나 그 밖에 경기도의 재난 대비 통신 분야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단체 또는 사람에게 「김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 2024. 7. 17.] [법률 제20030호, 2024. 1. 16., 일부개정]

- 제34조의2(재난현장 긴급통신수단의 마련)**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유선이나 무선 또는 위성통신망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긴급통신수단(이하 “긴급통신수단”이라 한다)이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긴급통신수단의 보유 현황 등을 조사하고,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재난관리책임기관, 긴급구조기관 및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 ④ 긴급통신수단을 관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본조신설 2013. 8. 6.]
[중전 제34조의2는 제34조의4로 이동 <2013. 8. 6.>]

-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7.>
-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2023. 1. 17.>
- ⑥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전문개정 2010. 6. 8.]

- 제55조(재난대비능력 보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관리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의 확보·확충, 통신망의 설치·정비 등 긴급구조능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 17.>
- ②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활동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긴급구조현장지휘대 등 긴급구조체제를 구축하고, 상시 소속 긴급구조요원 및 장비의 출동태세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7.>
- ③ 긴급구조업무와 재난관리책임기관(행정기관 외의 기관만 해당한다)의 재난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긴급구조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소방청장과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14. 11. 19., 2017. 7. 26.>

⑤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사상자의 신속한 분류·응급처치 및 이송을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현장 응급의료에 필요한 재난관리자원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 7., 2023. 1. 17.>

⑥ 제5항에 따라 긴급구조기관의 장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 1. 7.>

[전문개정 2010. 6. 8.]

[시행일: 2025. 7. 8.] 제55조